

연금저축계좌 상품설명서

-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·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-

■ 상품 개요

구분	주요 내용
상품명	■ 연금저축계좌
상품 특징	■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, 연금소득으로 저울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상품

■ 연금저축계좌 가입 및 납입

계좌 종류	<p>■ 연금저축펀드 : 자본시장법 (§12조)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(이하 펀드) 중개 -> 자산운용사, 증권사, 보험사 통해 가입</p> <p>■ 연금저축보험 : 보험업법 (§4조)에 따른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 계약 -> 보험회사 통해 가입</p>										
가입 대상	■ 제한 없음										
납입 한도	<p>■ 연간 1,800만원¹⁾ + ISA만기 계좌 전환 금액²⁾</p> <p>1) 전 금융기관 퇴직연금계좌의 개인부담금, 연금저축 합산</p> <p>2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이하 ISA)의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※ (참고) 다음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납입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②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는 경우 </div>										
세액 공제	<p>■ 연간 600만원 + ※ ISA 전환금액의 10% (300만원 한도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종합소득과세 표준</th> <th>세액공제 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준 없음</td> <td>6백만원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+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※ ISA 전환금액의 10%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(300만원 한도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합소득과세 표준	세액공제 한도	기준 없음	6백만원		+		※ ISA 전환금액의 10%		(300만원 한도)
종합소득과세 표준	세액공제 한도										
기준 없음	6백만원										
	+										
	※ ISA 전환금액의 10%										
	(300만원 한도)										

	종합소득과세 표준	공제율
	4천 5백만원 이하 (총급여액 5.5천만원 이하) 1)	16.5%
	4천 5백만원 초과 (총급여액 5.5천만원 초과) 1)	13.2%
1)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		

■ 연금저축계좌 운용 및 이체

운용 방법	<p>■ 연금저축보험 : 사전에 금융회사에 의해 설계된 방식에 따라 운용</p> <p>■ 연금저축펀드계좌 : 가입자는 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를 금융상황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투자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연금저축전용펀드(종류형 펀드의 연금저축계좌 전용클래스 포함) 및 ETF (인버스,레버리지 상품 금지)에 한하여 편입 가능
보수 및 수수료	<p>■ 개별 연금저축 계좌 약관 및 운용 상품별 투자설명서 참고</p>
계좌 이체	<p>■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로 다른 종류(신탁, 펀드, 보험)간의 이체도 가능하며, 구체적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연금계좌('01년1월 이후 개설)에서 타 연금저축 계좌('13년3월 이후 개설)로의 전액이체 ② 연령이 만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 경과한 연금저축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계좌(이하 개인형 IRP)로 전액 이체 ③ 연령이 만 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 경과한 가입자가 개인형 IRP를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이체 ④ 개인형 IRP에서 다른 개인형 IRP로의 전액 이체 </div>
계좌 승계	<p>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승계신청을 하여야 함. - 승계 후 연금저축계좌 내 금액은 배우자(상속인)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 적용

■ 연금 수령 및 인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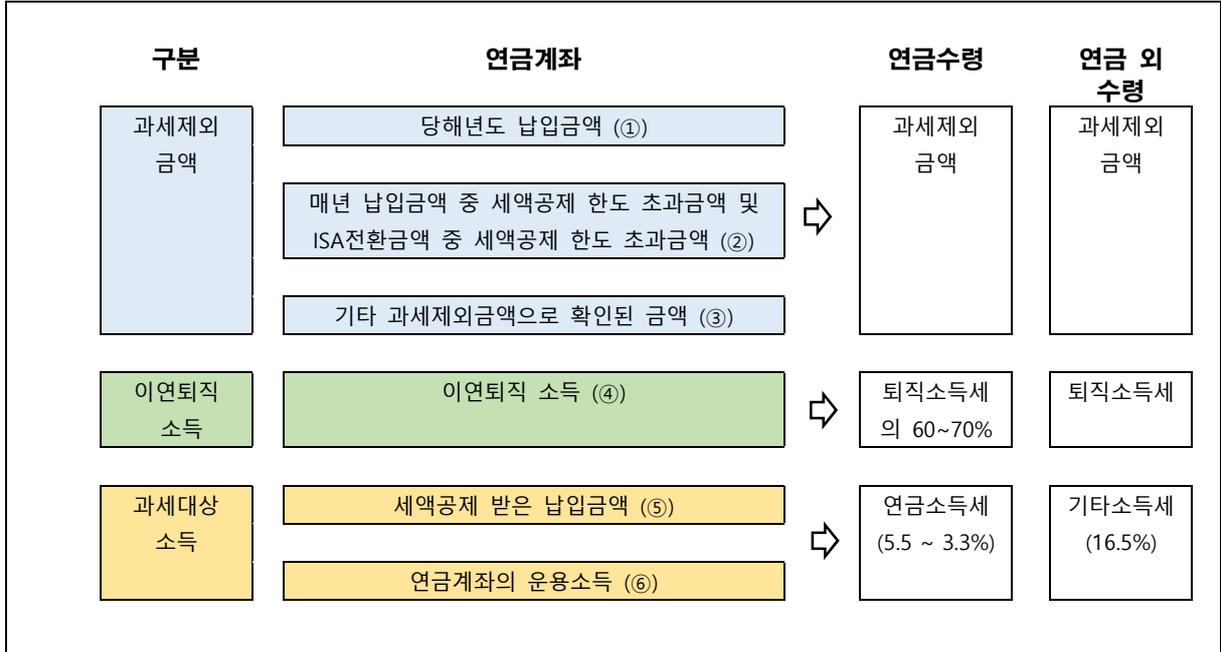
연금 수령	<p>① 연금수령 요건 : 55세 이후 및 가입 기간 5년 경과 (※ 단,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, 5년 경과 요건 미적용) -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, 수령주기, 수령금액 등을 지정하여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여야 연금수령 가능</p> <p>② 연금 수령 한도 : 연금수령이란 연금 수령 한도 내의 수령을 의미하며,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'연금 외 수령'에 해당</p> $\frac{\text{연금 계좌의 평가액}}{(11 - \text{연금수령연차})} \times \frac{120}{100}$ <p>1) 연금계좌의 평가액 : 기준가 X 누적좌수 2) 연금수령연차 :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합산한 연차</p>												
중도인출	<p>① 일반적인 경우 :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개시 전에 자금인출이 가능하나 -> 연금외수령에 해당되어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</p> <p>②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: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-> 연금수령으로 간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 시기 :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증빙자료를 갖추어 6개월 이내 신청 - 사유 및 증빙 자료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부득이한 사유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인출 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천재 지변</td> <td>X</td> </tr> <tr> <td>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</td> <td>X</td> </tr> <tr> <td>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</td> <td>O¹⁾</td> </tr> <tr> <td>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</td> <td>X</td> </tr> <tr> <td>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</td> <td>X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1) 아래 3가지 금액의 합으로 제한 (ㄱ)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(ㄴ)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(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) X 150만원 (ㄷ) 200만원</p>	부득이한 사유	인출 한도	천재 지변	X	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	X	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	O ¹⁾	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	X	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	X
부득이한 사유	인출 한도												
천재 지변	X												
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	X												
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	O ¹⁾												
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	X												
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	X												

■ 적용 세제

1. 연금저축계좌를 **연금 외 수령** 하는 경우 **연금수령 대비 고율의 과세가 적용**됩니다.
2. 연금저축계좌의 **자금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**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가입자는 연금수령 및 자금 인출 전 국세청의 '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'를 제출하면 과세제외 금액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<p>자금인출 순서</p>	<p>■ 1.과세제외금 -> 2.이연퇴직소득 -> 3.과세대상 소득(세액공제 받은 금액+운용소득) 순으로 인출되어 원천징수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※ (참고) 과세제외 금액의 인출 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2. 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세액공제 한도액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 3. 그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(‘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’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) </div>													
<p>연금 수령</p>	<p>① 과세제외금액 : 비과세 ② 이연퇴직소득 :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를 수령액으로 비율 안분 ※ 단,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시, 60% 1)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연금수령연차가 아닌 최초 연금수령한 연도부터 실제 연금수령한 연도를 계산하여 10년을 의미 ③과세대상소득 : 연금소득세(3.3% ~ 5.5%)적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분</th> <th>확정형연금</th> <th>종신형연금 (생명보험사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나이 (연금수령일 현재)</td> <td>만 70세 미만</td> <td>5.5%</td> <td rowspan="2">4.4%</td> </tr> <tr> <td>만 80세 미만</td> <td>4.4%</td> </tr> <tr> <td>만 80세 이상</td> <td>3.3%</td> <td>3.3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연간 연금소득금액(공적연금 제외, 퇴직소득재원 및 부득이한사유 제외) 1500만원 초과 시, 소득자는 유·불리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</p>	구분		확정형연금	종신형연금 (생명보험사)	나이 (연금수령일 현재)	만 70세 미만	5.5%	4.4%	만 80세 미만	4.4%	만 80세 이상	3.3%	3.3%
구분		확정형연금	종신형연금 (생명보험사)											
나이 (연금수령일 현재)	만 70세 미만	5.5%	4.4%											
	만 80세 미만	4.4%												
	만 80세 이상	3.3%	3.3%											
<p>연금 외 수령</p>	<p>① 과세제외금액 : 비과세 ② 이연퇴직소득 : 퇴직소득세 100% 부과 ③ 과세대상소득 : 기타소득세 16.5% 적용</p>													

※ 연금저축계좌 과세체계



■ 가입자 유의사항

-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전에, 개별 약관,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연금저축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, 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.
- 금융회사,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익률, 수수료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■ 투자자 유의사항

발생 가능한 불이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금저축계좌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• 연금저축계좌의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. • 연금저축계좌는 계좌 내에서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금융투자상품 원금 일부 손실 또는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. •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상품이며,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 • 중도 해지 등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("연금 외 수령")의 경우 기타소득세 (16.5% 지방세 포함)가 부과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(5.5% ~ 3.3%)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•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--------------	---

■ 고객의 주요 권리 및 민원처리,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

<p>청약철회권 (고난도 금융투자상품 限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,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,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.
<p>위법계약해지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규정한 위법 계약 해지 사유가 (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금지,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)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,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'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' 또는 '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를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'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.
<p>자료열람요구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금융회사는 자료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, 방법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작성하시어 지점 내방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<p>민원처리,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KCGI자산운용 고객센터(1588-5533), 및 홈페이지(www.kcgiam.com) 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할 경우 「금융소비자보호법 제35조제①항」 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1332)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.